

보도 일시	2022. 8. 10.(수) 09:00	배포 일시	2022. 8. 9.(화)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팀 장 지영철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 서상훈 (044-202-8891)

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

-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66조(휴식) 개정·시행 -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8월 10일(수)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「산업안전보건법」 하위 법령*을 개정·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(휴식)

- 이는,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.

<현 행>

<휴식의 제공(옥외 장소)>

- 고열·한랭·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
-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
 -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

⇒

<개 정>

<휴식의 제공(옥내·외 장소)>

- (현행과 같음)
-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

-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.
 -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.
 -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.
-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예를 들어 사업주는 “열사병 예방가이드”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℃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~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·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.
-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근로자의 건강·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”라고 하면서
 - “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 - 또한, “뒤늦은 감은 있지만,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'22. 8. 10. 부터 시행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

-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**실내작업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** -

- 그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온열질환 예방조치로는 물, 그늘(휴게시설), 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규정 하였으나,
 - 여름철 실외온도와 비슷한 실내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'휴식' 부여·제공을 적용하기 어려웠음
 - 이에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실내작업 근로자에게도 '휴식'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

☑ 개정 내용(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(휴식등))

< 현 행 >

< 휴식의 제공 >

- 고열·한랭·다습 작업을 하거나,
- **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** 작업을 하는 경우
 -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

< 개 정 >

< 휴식의 제공 >

- (현행 유지)
- **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**
 -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

☑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(실내작업장 위주)

물	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
그늘	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휴식공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.
휴식	폭염 특보시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- 체감온도 33℃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, 체감온도 35℃ 이상 또는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 ※ 체감온도 38℃ 이상 시 매시간 15분 이상씩 휴식하기

물 그늘 휴식

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

☑ 폭염 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·경보 발령

• 기상청 「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 홈페이지 및 날씨알리미 앱」 첫 화면의 온도 옆 “체감(00℃)”으로 표시

* 체감온도 :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,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
기온에 습도, 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

폭염 주의보

- 일 최고 체감온도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-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

폭염 경보

- 일 최고 체감온도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-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



☑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입니다.

물

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 /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그늘



- ✓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(휴식 공간)를 마련하여야 합니다.
 -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- 소음·낙하물·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합니다.
 -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자나 돛자리,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합니다.

휴식



- ✓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 -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,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
- ✓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(14~17시) 옥외작업을 피해야 합니다.
 - 업무량이나 속도를 줄이거나 신체부담이 덜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.
- ✓ 근로자가 열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.
 - ▲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 - ▲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

◆ 폭염특보 시 외부온도로 인해 실내·외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높은 실내 사업장은 아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(예시) 천막창고 등 임시 시설 내 작업공간 또는 연면적이 넓은 등 작업장 특성상 전체 냉방이 곤란한 작업장소

• 실내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작업장 내 냉방장치*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

* 주요 냉방장치 : 공기순환장치(환기장치), 선풍기, 냉풍기, 이동식 에어컨 등

•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창문이나 출입문을 여는 등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아이스조끼·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• 냉방장치 설치, 환기 등의 조치에도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 원인을 파악한 후 추가 대책을 수립*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.

* 냉방장치 추가 설치 및 작업장 환기 방법 개선 ⇒ 불가피한 경우 업무량 조정 및 휴식 시간 부여, 긴급하지 않은 작업은 일정 계획 변경

※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옥외작업의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참조하세요.

☑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조치하십시오.

※ 지역별 폭염 단계는 기상청 「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 > 날씨 > 기상특보 > 영향예보 > '산업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관심

체감온도
31°C 이상

- ✓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(또는 날씨알리미 앱) 등을 통해 기상 상황 확인,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(휴식 공간) 준비
- ✓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및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 사전 확인·구분

• 온열질환 민감군이란?

- ▲ 비만, 당뇨, 고혈압/저혈압 등 질환자 ▲ 온열질환 과거 경력이자 ▲ 고령자 ▲ 폭염 노출작업 신규배치자

•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이란?

- (작업 예시) 삽·망치·괘·괘·도끼를 이용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형틀·철근·타설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

주의

체감온도
33°C 이상
또는 폭염주의보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(휴식 공간) 제공
- ✓ 매시간 10분씩 그늘(휴식 공간)에서 휴식하기
 -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
- ✓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
- ✓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



경고

체감온도
35°C 이상
또는 폭염경보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(휴식 공간) 제공
- ✓ 매시간 15분씩 그늘(휴식 공간)에서 휴식하기
 -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
- ✓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
 -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
- ✓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
- ✓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



위험

체감온도
38°C 이상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(휴식 공간) 제공
- ✓ 매시간 15분 이상씩 그늘(휴식 공간)에서 휴식하기
 -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
- ✓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 -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
- ✓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
- ✓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

☑ 응급상황 대처 (주요 증상 발현시)

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,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,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!

※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건강상태를 작업전·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

폭염 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하세요!!

-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
- 집중력저하로 인한 떨어짐,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

